

# 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우리G 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일 : 2022.03.23 (수)

3. 변경 사유 :

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홍성원→박상욱)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박상욱→이승엽)
- '21.10.2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(대차대조표→재무상태표)

## ▣간이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'21.10.21 자본시장법 개정 에 따른 용어 변경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1.09.30 기준	2022.02.28 기준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2021.10.22 기준	2022.03.02 기준
운용전문인력	2021.10.22 기준	2022.03.02 기준

## ▣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'21.10.21 자본시장법 개정 에 따른 용어 변경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1.09.30 기준	2022.02.28 기준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2021.10.22 기준	2022.03.02 기준
운용전문인력	2021.10.22 기준	2022.03.02 기준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추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	2021.10.22 기준	2022.03.02 기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	- 책임운용전문인력: 홍성원 2021.07.30 ~ 현재	- 책임운용전문인력: 홍성원 2021.07.30 ~ 2022.03.22

	- 부책임용전문인력: 박상욱 2020.08.14 ~ 현재	박상욱 2022.03.23 ~ 현재 - 부책임용전문인력: 박상욱 2020.08.14 ~ 2022.03.22 이승엽 2022.03.23 ~ 현재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]	2021.10.22 기준	2022.03.02 기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동 내역]	- 책임운용전문인력: 홍성원 2021.07.30 ~ 현재 - 부책임용전문인력: 박상욱 2020.08.14 ~ 현재	- 책임운용전문인력: 홍성원 2021.07.30 ~ 2022.03.22 박상욱 2022.03.23 ~ 현재 - 부책임용전문인력: 박상욱 2020.08.14 ~ 2022.03.22 이승엽 2022.03.23 ~ 현재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.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<b>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</b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<b>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</b> 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동종유형 총보수	2021.09.30 기준	2022.02.28 기준
제 4 부.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2020.12.31 기준	2021.12.31 기준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운용자산 규모	2021.10.22 기준	2022.03.02 기준

■규약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30 조 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“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”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~④ &lt;생략&gt;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에 따른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 다.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제2항에 따른 <b>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</b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“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”이라 한다]을 그 <b>기준가격 산정일 전날</b>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~④ &lt;현행과 동일&gt;</p>
제 32 조 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대차대조표 2.손익계산서 3.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②~③ &lt;생략&gt;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<b>재무상태표</b> 2.손익계산서 3.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②~③ &lt;현행과 동일&gt;</p>
제 39 조 (보수)	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 3.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	<p>①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b>재무상태표</b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 3.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 <p>③ &lt;현행과 동일&gt;</p>